"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CONTENTS

제1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 3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4
1-2 상권정보시스템 ····· 7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 11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 12
2-2 역량 Jump-Up프로그램 ····· 15
2-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18
2-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21
2-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23
2-6 나들가게 육성 ····· 26
2-7 유망 프랜차이즈화 지원 ····· 29
2-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32
2-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35
2-10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37
2-1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39
2-12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41
2-1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 43

제3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 45
3-1 희망리턴패키지 ····· 47
3-2 재창업패키지 ····· 48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50
3-4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52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 55
4-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56
4-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59
4-3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시장) 지원사업 ····· 62
4-4 청년상인 육성 ····· 65
4-5 온누리상품권 발행 ····· 68
4-6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71
4-7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 75
4-8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 77
4-9 전통시장 대학 협력사업 ····· 80
4-10 상인교육 및 인프라지원 ····· 83

CONTENTS

4-11 시장마케팅 지원 ····· 86
4-12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89

제5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 93
5-1 소공인특화자금 ····· 94
5-2 성장촉진자금 ····· 96
5-3 일반경영안정자금 ····· 98
5-4 청년고용특별자금 ····· 100
5-5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 ····· 102

제6장 일자리 안정자금 ····· 105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 108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112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A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업종전환희망자를 선발해 재기의욕 고취, 이론·실습 등 60시간 내외의 재창업패키지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창업패키지 사업설명 참조)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 업종별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합니다.(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에 접속하시면 전국 3,660개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53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Q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ICT 교육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제 1 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4
1–2 상권정보시스템 7

1-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명 내외(110억원)

○ '16년 지원현황 : 412명, '17년 지원현황 : 354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단, 음식점업,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공통·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실시

○ 점포체험교육 : 이론교육 수료생에게 체험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16주)

○ 창업멘토링 : 점포체험기간 동안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

○ 사업화지원 : 우수졸업생을 선발하여 매장모델링,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5천만원까지, 단, 자부담 50%)

신청·접수 '18. 1월 중 ~ '18. 2월 중

○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선발(5개 지역 1기당 150명 내외/2기 운영)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전문성 및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창업마인드 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락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02-723-0174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3-0212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053-353-7667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062-367-0135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042-363-7494
경기 전용교육장	-	031-204-7019

제출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 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공고 참조

처리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지원
7기	'18.1월중	'18.2월초	'18.2월초 ~3월중	'18.3월말 ~7월말	'18.8월초 ~11월말
8기	'18.4월중 ~'18.5월말	'18.6월초	'18.6월중 ~7월말	'18.8월초 ~11월말	'19.1월초 ~'19.4월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공단→교육생	전용교육장	체험점포	개별 사업화 수행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1

알려줘요!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사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예시: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디지털 장례업, 반려견 놀이방 등)

1-2 상권정보시스템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업종별 창·폐업, 인구, 집객시설 등 53종의 상권현황과 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sg.sbiz.or.kr)입니다.

지원대상 全국민(소상공업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창업중인 자)

지원내용

○ 상권분석

■ 특정 지역·영역·업종의 업종, 매출, 인구, 지역 53종의 상권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대분류 8종, 중분류 95종 소분류 837개

업종(15)	선택상권·행정구역별 선택업종 추이, 유사업종 추이, 전년대비 증가·감소 업종, 음식업종 업소 변화 추이, 전년대비 업소수 비교, 업소변화 추이, 한식업종 업소수 증감 추이, 한식/백반/한정식업종 업소수 증감, 중·대분류 업종별 창/폐업률 및 업력 통계, 선택업종·유사업종·시설
매출(7)	월평균 매출액 비교, 건당 매출액 비교, 선택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중분류 업종 평균매출 및 이용건수 추이, 주중/주말/요일별 매출 비율, 시간대별 매출 비율, 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율
인구(18)	인구 구성, 주거인구·직장인구·유동인구 현황,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월별 유동인구 추이,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별 분포, 세대 규모별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 면적별 세대수, 아파트 기준기사별 세대수, 아파트 동/세대수 추이, 선택 상권의 배후지 인구 변화 추이,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추이
지역(13)	주요 집객시설 현황·추이,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 점포평균 임대시세, 지역별 점포 평균 임대시세 추이, 학교시설 현황, 교통시설, 지하철 이용 현황, 지하철 승하차 인원 추이, 기업체수 통계, 브랜드지수, 지역별 평균 임대료 비교, 인근 주요상권점포 평균 임대시세

○ 경쟁분석

■ 업소별 경쟁영역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 할수 있는 지표로 안전,주의,위험, 고위험 4단계 경고등 형태로 제공

음식(21)	아이스크림판매,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 국수만두칼국수, 도시락전문, 떡볶이전문, 라면김밥분식, 죽전문점, 한식백반한정식, 해장국감자탕, 양식, 일식수산물, 중국음식, 간이주점, 갈비삼겹살, 곱창양구이전문, 족발보쌈전문, 호프맥주, 후라이드양념치킨
소매(12)	건강식품, 슈퍼마켓, 편의점, 신발소매, 안경원, 일반의류, 캐쥬얼스포츠의류, 꽃집꽃배달, 화장품판매점, 사무문구용품, 인테리어욕실용품, 일반가구소매
서비스(12)	발네일케어, 비만피부관리, 여성미용실, 노래방, 모텔여관여인숙,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어린이영어, 학원(음악미술체육), 학원(입시), 세탁소빨래방, 자동차정비

○ 입지분석

■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업종별 입지가치(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 등급정보

* 제공업종은 경쟁분석과 동일

○ 수익분석

■ 특정 위치·업종의 추정매출액, 투자비 회수를 위한 목표매출 및 고객수, 유사한 입지·업종의 매출현황의 비교분석 정보 제공

* 제공업종은 경쟁분석과 동일

○ 점포이력

■ 특정 위치의 개·폐업 이력정보, 특정 업종의 창업여부 및 영업기간 등의 정보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상권분석서비스 확대(행정동 통합제공) 및 경쟁분석의 제공업종 확대 ('17년 45종)

이용방법

○ (포털) 검색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이용

○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biz.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안드로이드마켓·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 후 앱을 설치하여 이용

문 의 처

○ 콜센터 ☎1644-530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화전략실 ☎042-363-7141~7145

알려줘요!

Q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고 언제 갱신되나요?

A 41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30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되며,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상권商圈) :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정도로 상업상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공간적 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 표현가능하며,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통계청 집계구를 기반으로 도로망, 하천 등의 인공·자연물을 반영한 36만개 블록(업소수 50개 이상)이 2개이상 연결된 영역을 의미

* 법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용어로 ‘상점가’ 존재

제2장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12
2-2 역량 Jump-Up프로그램 15
2-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18
2-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21
2-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23
2-6 나들가게 육성 26
2-7 유망 프랜차이즈화 지원 29
2-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32
2-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35
2-10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37
2-1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39
2-12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41
2-1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43

2-1 소상공인 경영교육

|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는 경영교육 지원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교육 및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0,000명 내외(50.5억원)

○ '16년 지원현황 : 21,070명, '17년 지원현황 : 13,027명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교육신청 당시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자

지원 내용

○ 전문기술교육(5,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

○ 경영개선교육(3,000명) :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교육 지원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교육비 무료

신청 · 접수 '18.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소상공인 경영교육 → 교육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수강	교육비 지원신청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교육생 → 공단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생 ↔ 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 1588-5302, 042-363-7821

알려줘요!

Q 소상공인 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과정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 경영교육 - 원하시는 업종 또는 지역의 민간교육기관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민간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가능

Q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강시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1인당 연간 2회, 교육비의 90%까지만 지원되며, 최대한도는 40만원입니다.

Q 교육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A 교육비는 교육생이 미리 선납하여야 하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 교육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Q 교육비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비 지원신청메뉴를 선택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역량 Jump-Up프로그램

|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연계지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컨설팅) 후 연계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25개 업체(예산 13억원)

○ '17년 지원현황: 538개 위기진단컨설팅 후 499개 연계지원

지원 대상 전년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또는 2년 이상 매출액이 연속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나들가게 지원사업,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등 공단 유사사업 수혜업체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위기진단) 해당 업종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진단·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등 지원

○ (연계지원) 신제품·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연계지원 대상자는 위기진단 컨설팅 수진업체 중 평가 후 선정되며, 부가가치세 및 전체 정부 지원금의 10%는 본인 부담

○ 세부사업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조건	
역량 Jump-Up 프로그램	• 위기진단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 지원 • 신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지원, 법률자문, 내외부리모델링 지원	• 연 1회 지원·협약기간 2개월 • 최대 400만원 지원	전체 정부지원금의 10% 신청인 본인 부담(VAT 별도 부담)

신청·접수 '18. 2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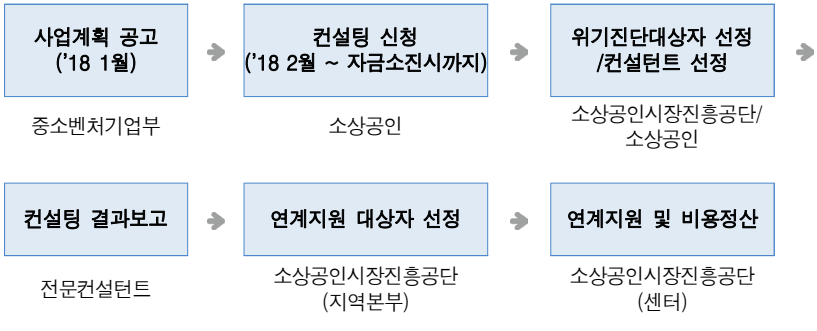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1~3

○ 소상공인마당 : http://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소상공인컨설팅 후 역량 Jump-Up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소상공인컨설팅과 별도로 연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역량Jump-Up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마케팅전략·기술전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00개 업체 지원(40억원)

○ '17년 지원현황: 4,672개에 대한 경영 및 기술전수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세부사업내용

구 분	수 행	일 수 (기간)	컨설팅 내용	지원조건
소상공인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2~5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자부담금 125천원 이내 (10%)

신청 · 접수 '18. 2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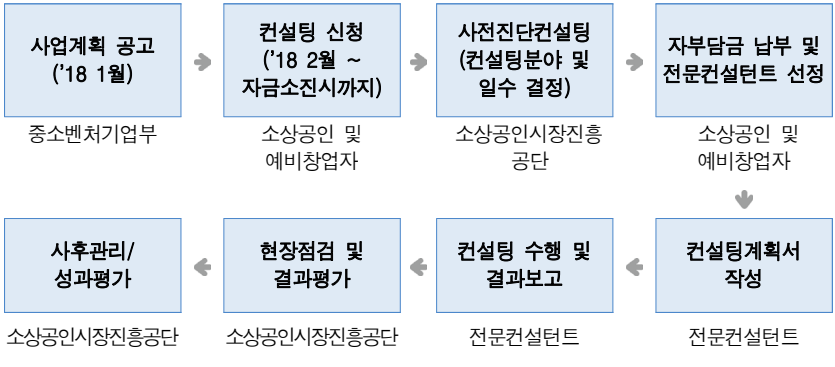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1~3

○ 소상공인마당 : http://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전진단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지원일수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2-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0개 업체(2억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 · 접수 연중(자금소진시까지)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제출 서류

구 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리 절차

신청연중 (자금소진시까지)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 의 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예) 2인가구, 3,518,000원, 4인가구 5,584,000원 <2017년 기준>

2-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50개 조합(270억원)

* 17년 지원현황 : 620개조합 신청, 418개조합 선정, 평균 34백만원 지원 (공동사업, 판로지원 기준)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外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소상공인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협업인프라(2~5억원 한도 내), 판로확대 및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지원

○ 협업인프라 구축 : 공동브랜드·공동마케팅·공동장비구매·공동R&D·공동네트워크

■ 소요비용 원칙 : 정부(70%), 자부담(30%, 현금출자 원칙)

○ 판로지원 : 박람회·전시회 참가 및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지원 등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 협동조합의 이해·필요성, 조합설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신청 · 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소상공인 조직화	① 소상공인 예비협업체 발굴·모집 소진공 (지역센터)	② 자가진단 후 접수 예비협업체	③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지원 소진공 (지자체 등)	④ 협업 사업계획 수립지도 소진공 (지역센터)
협동조합 활성화	⑤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신청·접수 소진공 (지역센터)	⑥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중기부&소진공	⑦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소진공 (지역센터)	⑧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중기부&소진공

문 의 처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2,7720~6),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5),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임

2-6 나들가게 육성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 개점, 점포운영 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0여개 나들가게(예산 48억원)

- ○ 신규개점 지원 : 제한 없음
- ○ 점포경영 지원 : 1,000개 내외 나들가게, 6억원
- ○ 나들가게 선도지역 : 20개 지자체(신규 3) 1,000개 내외 나들가게, 42억원
  - * '17년 지원현황 : 1,988개 나들가게(개점 247개, 경영개선 872개, 선도지역 나들가게 869개)

지원 대상 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① 점포 총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

-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지원 내용

- ○ 신규개점 지원
  - ▪ (POS 프로그램) 점포유형별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 ▪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
- ○ 점포경영 지원
  - ▪ (점포경영 개선) 상품진열, 가격표 부착, POS 활용교육 등 지원(10% 자부담)
  -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 (자금대출) 경영안정자금 융자(최대 7천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연계)

○ 나들가게 선도지역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 시설 및 경영 개선, 경영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신청 · 접수 '18.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신규개점 지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59개) 방문 신청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지원 신청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 신규개점 지원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점포경영 지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나들가게 POS로 신청

처리 절차

○ 나들가게 신규개점

신청·접수 (수시)	→	현장평가·선정	→	현장교육·협약	→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	개점완료
희망 점주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POS 설치업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 나들가게 점포경영 지원

사업계획 공고 ('18.3월)	→	지원신청 접수 ('18.4월~)	→	현장평가·지원대상 선정 ('18.4월~)	→	점포경영 지원 실시 ('18.4월~)	→	지원결과 확인 ('18.5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희망 점주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업체		소상공인 지원센터

문 의 처

- 나들가게 POS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8939

알려줘요!

Q 나들가게 온라인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에 저렴한 상품공급을 위해 온라인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공급사별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별로 수시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3개 지역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0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경영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 유망 프랜차이즈화 지원

|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맹본부 시스템 체계, 브랜드 디자인 및 IT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멘토링,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0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17년 지원현황 : 중소프랜차이즈 15개, 이익공유형 12개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즈와 신규 프랜차이즈

- ○ 자격요건 :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 ○ 유망프랜차이즈는 직영점(사업주 본인) 1개 이상 또는 가맹점 10개 미만
- ○ 중소프랜차이즈는 가맹점 10개 이상~20개 미만
- ○ 연계지원은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선택적 종합지원

지원분야	항목	내 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60백만원 자율선택형(유망은 시스템구축 필수)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웹 홈페이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팜플렛,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멘토링		선배 프랜차이즈 CEO와 매칭을 통해 멘토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면담, 이메일 등 매칭 상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선택적 통합지원	80% (40백만원)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6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사후관리 포함)	신규, 연계 구분없음	- 시스템 체계 구축	자율선택형 (유망은 시스템 구축 필수)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구축		- IT환경 구축	
-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지원	
② 홍보 및 멘토링	-	② 홍보, 멘토링, 교육	-

○ 이익공유프랜차이즈 설립 및 전환시, 우대지원(90%지원, 100백만원 한도)

신청 · 접수 '18. 1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업체 선정 :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

○ 개발업체 선정 : 조달입찰을 통해 개발회사 선정(정량·기술평가)

제출 · 서류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재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재무재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공고 ('18.1월중)	→	지원업체 선정 ('18.2월~3월)	→	개발업체 선정 ('18년 4~5월)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금 지급
중기부				공단		지원업체, 개발회사, 공단(3자 협약)

→	중간평가 (중간점검)	→	멘토링 실시	→	최종보고 (최종평가·잔금 지급)
	지원업체+개발회사 ↔ 공단				지원업체+개발회사 ↔ 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4, 775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Ⅰ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Ⅰ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Ⅱ등급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II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IV등급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 박람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수준평가 심사비 국비 일부 지원

신청 · 접수 '18. 3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160만원)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8.2월중)	신청·접수 ('18.2월~3월)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평가결과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원 조사 전문업체	운영위원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4, 775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2-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2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지역, 업종확인 가능
*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19개 업종의 제조업체(소공인법 시행령 별표 규정)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제조업24개 업종 중 ①담배 제조업/②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③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⑤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원 내용 교육, 컨설팅, 특화사업 등 지원

○ (교 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경영애로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신청 · 접수 연중 신청·접수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문의

처리 정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
소공인→센터		평가위원회		소공인		소공인→센터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0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17년말 기준) >

	시·도	시·군·구	분야	특화센터명	대표전화
1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타기계 및 장비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070-4170-5973
2	경기	화성시(팔탄면)	기타기계 및 장비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031-354-3641
3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고양 장항 인쇄 센터	031-913-6611
4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032-234-5911
5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031-423-6726
6	경기	광주시(오포읍)	가구	광주 오포 가구 센터	070-4436-3154
7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031-8067-5040
8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조)	성남 상대원 식품제조 센터	031-750-2890
9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062-228-2348
10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 서남 인쇄 센터	062-236-5013
11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053-661-2357
12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제조(안경테)	대구 노원 안경 센터	053-355-0994
13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 정동 인쇄 센터	042-226-5556
14	대전	대덕구(상서동)	금형제조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042-939-4827
15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042-629-7728
16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051-631-2050
17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051-636-7518
18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051-890-2334
19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02-2277-2922
20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02-741-5366
21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02-2634-7727
22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서울 신당 의류제조 센터	02-3672-4348
23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02-919-9623
24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02-741-8755
25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제품(커튼·블라인드)	서울 반포 섬유(커튼·블라인드) 센터	070-4848-0972
26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02-865-9213
27	서울	도봉구(방학동)	섬유(양말)	서울 방학 섬유제조 센터	02-956-3381
28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032-723-9982
29	전북	전주시(팔복동)	금속가공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063-219-0342
30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순창 장류제조 센터	063-652-1030
31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 인삼(식품) 센터	041-750-1653
32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청주 중앙 인쇄 센터	043-225-1028

2-10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집적지구 연계 공동기반시설 구축 5개 내외

지원 대상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

*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19개 업종의 제조업체(소공인법 시행령 별표 규정)를 의미

<행정구역별 기준>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 內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 內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 內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지원 내용 공동기반시설(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2/3 지원(15억원 내외)

신청 · 접수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7개 시·도지사에게 사전 안내 실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등

*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

처리 절차

사전검토	현장실사	종합평가	집적지구 지정	인프라 구축
중기부, 공단	현장실사단	평가위원회	중기부	시·도지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

2-1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19개 업종의 제조업체(소공인법 시행령 별표 규정)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최근 1년 이내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지원 내용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지원 한도	보조 비율
온라인몰,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몰 및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신규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기획전·광고비, 물품임차비 등)	5	80%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10	
홍보영상제작	홍보동영상, 홈쇼핑(SB광고 포함), 방송광고(PPL 포함)	10	
디자인 개발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5	
인증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5	
해외배송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 대행비 등	5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신청 · 접수 2018년 2월, 4월 소공인 홈페이지
(www.sbiz.or.kr/ssm/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제품설명서,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소공인→공단	공단	평가위원회	소공인↔공단	소공인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 790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고

2-12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Ⅰ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지원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0개 과제 내외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19개 업종의 제조업체(소공인법 시행령 별표 규정)를 의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수혜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

지원 내용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80% 한도)

지원항목	세 부 내 용
제품 · 기술 향상 지원	제품개선, 수출·수입대체, 혁신제품 개발, 협업제품 개발, 공동 기술애로 해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생산정보체계 구축	낙후된 소공인 작업장에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작업환경 등 개선지원(최대 2천5백만원까지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신청 · 접수 2018년 2월, 4월 소공인 홈페이지 (www.sbiz.or.kr/ssm/main.do)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포함)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과제 요약서, 동의서 등

*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신청·접수	1차 평가	사업계획 수립	2차 평가	협약체결	사업 수행
소공인→공단	서류 평가	전문기관↔소공인	발표 평가	공단↔소공인	소공인

* 지원항목별 평가 단계 일부 상이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3, 791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조

2-1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전국 59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전문가 파견)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불공정거래 전문가들이 피해유형별로 1:1 지원

○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신청 · 접수 전국 59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방문 등

피해상담 신청 (연 중)	→	기본상담 진행	→	전문가 자문 및 분쟁조정 신청 등 대응지원	→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등) 및 전문기관(공정거래조정원 등)		소상공인진흥공단

문 의 처

-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35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56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430

알려줘요!

Q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인가요 ?

A 대기업,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의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3–1 희망리턴패키지 46
3–2 재창업패키지 48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50
3–4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52

3-1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85억원, 8,0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재기교육 :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 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지원

신청 · 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 기관 모집·선정 ('18.1)	→	사업 공고 ('18.2)	→	신청·접수 ('18.3)	→	컨설팅 및 재기교육 지원 ('1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3-2 재창업패키지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억원, 36,0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 연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유흥향락업종(유흥주점, 도박게임장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과정당 60Hr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 이론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수행 : 민간교육기관)

○ 창업멘토링 :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 지원(수행 : 멘토단)

신청 · 접수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제출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 및 선정	→	교육신청·접수	→	교육과정 운영	→	멘토링 지원
민간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생 → 멘토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 1588-5302, 042-363-7827

알려줘요!

Q 재창업패키지사업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폐업·사망시 2.4%, 노령·퇴임시 2.1%('16.4분기 기준)
* 부금납입월수 30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1~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 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4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00개 업체(12.5억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1등급(154만원)부터 7등급(269만원)까지 존재 (소득대체지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중 일부
* 고소득 전문직종, 사행성 불건전업종 등

지원 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

○ 기준보수 1등급인 자의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10,400원) 지원

* '18.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1357)로 신청서류 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에서 발급 가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등

처리 절차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수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1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료 납입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 **보험료 지급 및 사후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1)

알려줘요!

Q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신청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을 통한 가입이 가능

제 4 장
전통시장 활성화

4–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6
4–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9
4–3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시장) 지원사업 62
4–4 청년상인 육성 65
4–5 온누리상품권 발행 68
4–6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71
4–7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75
4–8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77
4–9 전통시장 대학 협력사업 80
4–10 상인교육 및 인프라지원 83
4–11 시장마케팅 지원 86
4–12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89

4-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우너 규모 296곳(788억원)

* '18년 지원현황 : 296곳, 시장당 평균 2.7억원(788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사업추진주체)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아케이드, 시장 내 도로, 화장실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 전기· 가스· 소방 ·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 · 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대상 사업에 '시설물 철거사업'도 포함(안전문제 등 시·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화재예방시설 시·도별 전체 예산의 12.5%이상 의무 편성, 안전점검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된 시설개선 유도

* 연도별 의무편성 비율(%) : ('18) 10 → ('19) 12.5 → ('20) 15 → ('21) 17.5 → ('22) 20

○ 실집행률 50%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 · 접수 '17.12월~'18.2월 중 ('19년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상인회 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사업공고 ('17.12월)	신청·접수 ('17.12월~ '18.2월말)	현장평가·진단 ('18.2월~4월)	심의위원회 ('18.4월)	최종선정협의회 ('18.5월)
중기부	시·군·구	지방청, 시·도, 전문가	시·도	중기부

예산(안) 제출 ('18.5월)	예산검토 및 정부안 ('18.6월. ~ 9월)	예산확정 ('18.12월)
중기부 → 기재부	기재부	국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비율 및 자부담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30%), 민간부담(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5%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4-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 시장(1,082억원)

* '17년 지원현황(998억원) : 64곳(주차장 건립지원), 26곳(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지원이 안되는 시장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우대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주차장 미보유 시장

지원 내용

○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 부지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하주차장 건립지원 허용(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지원)

신청 · 접수 '17.12월~'18.1월 중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지방중기청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17.12월)	신청·접수 ('17.12월~ '18.1월)	현장평가·진단 ('18.2월)	추천위원회 ('18.2월)	최종선정협의회 ('18.2월)
중기부	시·군·구	지방청, 시·도, 전문가	소진공	중기부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3월~)	사업 추진 ('18.3월~)
중기부 → 시·군·구	시·군·구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설현대화와는 달리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4-3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시장) 지원사업

Ⅰ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찾는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규모

85곳 내외(383억원)

* '17년 지원현황 : 신규 103곳 포함 171곳, 565억원 지원

○ 지역선도형 : 2년간 시장당 최대 20억원 이내(2곳 내외, 10억원)
○ 문화관광형 : 2년간 시장당 최대 10억원 이내(23곳 내외, 303억원)
○ 첫걸음 기반조성 : 1년간 시장당 3억원 이내(30곳 내외, 60억원)
○ 첫걸음 컨설팅 : 6개월간 15백만원(30곳 내외 5억원)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

지원이 안되는 시장

✓ 신청일 현재 기존 특성화 시장(글로벌, 지역선도, 문광형, 골목형 등) 참여중인 시장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처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
✓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가능
✓ 기존에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지원을 받은 시장

지원우대

- 도시재생구역 내 포함시장 우선 선정
- 공설시장,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직접 관리하는 시장 우대(상권내몰림 방지)
- 임대료 동결·조정 자율합의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
- 청년몰, 시설현대화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장

지원 내용

○ 지역선도형 : 유통 + 복지가 결합된 지역커뮤니티 구축 프로젝트

-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방과 후 교실, 공공회의실, 문화센터 등을 유치하여 지역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시장활성화 프로젝트
- 청년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연계한 세대융합형 전통시장 프로젝트

○ 문화관광형2.0 :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극대화하려는 특성화 프로젝트(아래 예시 참고)

- (문화접목) 지역특색(문학, 관광, 역사)과 연계, 투어코스, 체험, 등 문화콘텐츠 개발
- (특화상품) 시장별 대표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판로개척
- (관광인프라) 명품화장실, 게스트하우스, 첨단조명 등 시장특성 반영 관광인프라 구축
- (디자인 재생) 노후공간 및 시설 등에 시장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접목

○ 첫걸음시장 : 특성화를 처음 추진하는 시장의 특성화 기초역량 배양

- **(첫걸음 기반조성)** 기초역량을 보유한 시장의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 첫걸음시장 추진성과를 재평가하여 우수한 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 연속지원

- **(첫걸음 컨설팅)** 기초역량이 일정수준 이하인 시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서비스혁신 전략 수립, 상인조직 역량배양 등을 지원

  * 특성화 첫걸음시장 신청 후 선정 시 탈락한 시장을 우선 지원

  * 희망사업 프로젝트, 첫걸음시장은 화재감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신청 · 접수

○ 매년 12월 ~ 다음연도 1월

- 관할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시장에 대하여는 특성화 추진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만 사업 참여를 허용

  * 카드결제율, 화재공제 가입률, 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화재·안전, 위생관리상태 등

제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계획공고 (12월)	신청서 작성 (12월~1월)	서류.현장평가 후보시장 선정 (2월)	전문가(PM) 파견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2월)	최종 심의 선정 (4월말)
중기부·소진공	상인회·기초지자체	소진공	소진공	중기부.소진공

→ 사업 시행 (5월~)

공단·시장·사업수행자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47,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2, 7623(지역선도형) 7622, 7788, 7626(문광형), 7781, 7783, 7786, 7787, 7627(첫걸음시장)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각 사업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므로 시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4 청년상인 육성

| 청년에게 희망을, 전통시장에 활력을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청년몰(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으로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 규모

○ 청년몰 10곳 내외(113억원), 청년창업 100명 내외(38억원)

- '17년 지원현황

  * 청년몰 조성 : 12곳 90억원 (1곳 당 10~30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청년창업 : 15곳 200명, 51억원 (점포당 2.5천만원 이내, 국비 60~100%)

지원 대상

○ (청년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청년상인) 전통시장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창업),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도약)

- 청년몰 일정구역(500m^2) 이내에 20점포 이상 확보 시 신청 가능

지원이 안되는 시장

✓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한 시장은 지원 제외
✓ 청년상인, 청년몰 조성사업 참여 후 중도 포기한 시장
✓ 소규모 도시(인구 15만명 이하)는 중복 설치 제한

의무사항

- 사업 추진 시 점포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임대료 동결·조정에 대한 자율합의가 있을 것
- 청년몰 내 화재감지시설 설치

지원 우대

○ 공설시장 또는 지자체 점포매입시 최우선 선정

○ 도시재생구역 내 포함시장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청년몰 조성 :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

-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원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30억 이내에서 조정 가능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 청년창업 : 창업교육, 체험 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 비용 지원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사후 정산 원칙이며,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 물품구입비, 장비임차료 등 직·간접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제외
- 전략업종 선정 → 상인 공모/선정 → 창업교육 → 체험점포 운영 및 인테리어 등 점포 오픈 준비 → 점포 오픈 → 경영·판로 지원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

- 지자체·상인회 추천 → 심사선정 → 전문가 컨설팅 → 시작품·디자인 개선 지원

신청 · 접수

○ 매년 12월 ~ 다음 년도 1월

- 관할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시장의 사업 참여 결격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평가 : 시장입지현황, 고객층 분석, 청년상인 모집가능성, 성장성 등

○ 발표평가 : 사업성, 추진여건 및 추진 의지,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5부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계획공고 (중기부·소진공)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상인회)	접수 및 평가 (중기부·소진공)	시장선정 (중기부)	사업 지원	사업정산 및 완료보고
12월	12월~1월	2월 말	3월	4월~	'19년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47, 456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팀 : 042-363-7971, 777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청년상인 모집시 점포 수(청년몰 20개, 청년창업 5개)와 나이제한(만 39세 이하)은 변경 가능한가요?

A 시장상황에 따라 청년상인 모집 점포 수는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상인의 나이기준은 법(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5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어느 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법정상품권으로, 시중의 14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행 규모

'18년 1.5조원 규모 발행계획

* '17년 판매실적 : 1.1조원 판매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4개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신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2월 판매예정)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BC카드(02-3475-8491),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에서 확인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전에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 등록 필요

○ 가맹점 등록 신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

■ 신청 및 등록절차

가맹 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	가맹점(가맹시장) 자격요건 심사	→	가맹점 승인 및 등록
개별상인, 상인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지원 내용

○ 상인(개별가맹점)

▷ 지류 및 전자상품권 판매, 회수, 카드 수수료 지원

○ 상인회(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환전대행 시 액면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

상품권 종류

○ 지류상품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삼만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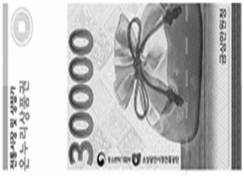

○ 전자상품권

오만원권

십만원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7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 042-363-7641~7643, 7647, 763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1357 → 0번)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전통시장 등에 18만여개 점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가맹점 검색 및 조회도 가능하니 많은 사용 바랍니다.

4-6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사업 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 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년(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가입 금액 예시>

구분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주계약	재물손해	A급	66,000원	132,000원	198,000원
		B급	101,500원	203,000원	304,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급별 \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가입이 안되는 점포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

신청 · 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3, 7974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www.fma.semas.or.kr

처리 절차

알려줘요!

Q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복보상이 가능한가요?

A 손해보험의 '이득 금지원칙'에 따라 모든 화재보험 상품은 손해액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계신 목적물(동산/부동산)보다 적은 가입금액의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보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 판매되는 화재보험은 대부분 실손이 아닌 비례보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가액 부동산 5천만, 동산 2천만 원인 가입목적물에 가입금액 부동산 2천 5백만, 동산 1천만원 짜리 상품을 가입하고 일부(50%) 화재 발생 시, 민영 화재보험은 실제가액의 50%만을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실지급액은 부동산 1,250만, 동산 500만원만을 지급합니다. 이를 비례보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실손보상으로 부동산 2천5백만, 동산 1천만을 보상하며 확정된 피해액을 한도 내 전액 보상합니다.

4-7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안전교육실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지원 규모 358개 시장 내외(예산 2,272백만 원, 국비 100%)

지원 대상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

○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 대상시장 선정

지원 내용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시장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

○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 점검

○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

○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전통시장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

<분야별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비고
소방	• (공용구간)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 · 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 • (개별점포)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	분야별 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시장별 안전 등급화
전기	• (공용구간)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 • (개별점포)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	
가스	•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 * 가스누출 점검, 감지기상태 점검, 가스용기 보관함 점검 등	

추진 절차

대상시장 선정	점검기관 선정	사업시행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중기부 (지자체 추천 시장)	공단 (분야별 점검 기관 협약 체결)	전통시장별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기관)	분야별 점검 기관 → 상인회	분야별 점검기관 → 중기부,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0,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8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알려줘요!

Q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검인가요?

A 화재안전점검은 법정의무점검이 아니지만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입니다.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상인 분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료점검이므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Q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도 해 주나요?

A 공용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예산으로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점포는 점포주께서 자진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4-8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 화재 초기 진화, 대형화재로의 확산 방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감지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

지원 규모 3.2만점포(180억원)

* '17년 지원현황 : 화재감지시설 시범사업 – 6개 시장, 1,123개 점포(예산 578백만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 479개 시장(예산 353백만원)
노후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 – 2개 시장, 310개 점포(예산 600백만원)

지원 조건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 지방비 및 민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

- 영업점포의 50%이상 신청한 곳(50% 미만 신청 불가)
- 민간부담금(30%) 확보가 가능한 곳(민간부담금 지자체 부담가능)

지원 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 부분 화재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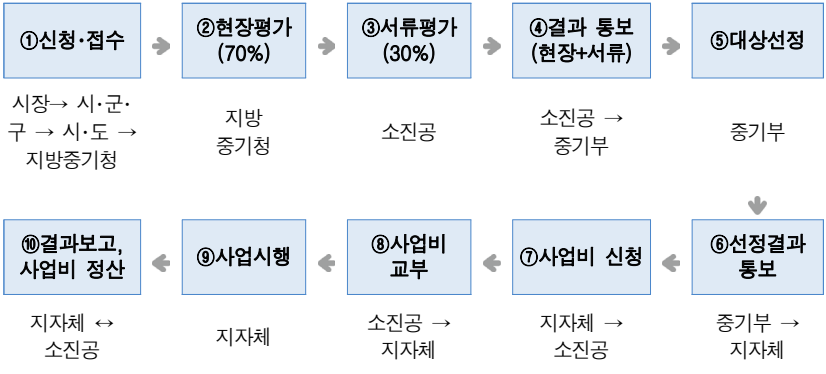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89, 7974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지역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담당자

알려줘요!

Q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나요?

A 네,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한 소방서와의 연계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광역시·도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신청점포수가 전통시장 영업점포수의 50%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영업점포수 50% 이상의 점포주(상인) 동의서명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기에서 감지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미리 녹음되어 있는 멘트로 소방서(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비

주소형감지기: 화재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감지기

4-9 전통시장 대학 협력사업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접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다양한 성과물을 전통시장에 다각적으로 접목시켜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7개 전통시장-대학(29.55억원)

* '17년 지원현황 : 17개 전통시장-대학 지원대학당 최대 1.5억원 (최대 2년, 국비 100%)

지원 대상

전통시장과 협업하는 2~4년제 대학교

* 「전통시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동법 제 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지원 우대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불가 시장 및 대학

✓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참여시장 및 '17년 글로벌명품시장, 골목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선정시장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 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대학)**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대학교

* 교육부에서 발표한 '18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대학 명단 참조

지원 내용

○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시켜 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 **특화상품개발** 먹거리 레시피·기념품 개발, 상품개발 등 장비사용료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마케팅** 전통시장 안내 홍보물 및 가판대 디자인, 특화상품의 CI, BI 개발 지원

- **네트워킹 연계** 대학 및 행사, 페어, 국제대회 연계 참여(전통시장우수상품페어, 국제발명대회)
- **창의특화접목**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분야(지원분야 이외 창의적이고 향후 지원성과 도출 가능사안 지원)

* 타 사업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 성격(공동마케팅, 시장홍보, 상인교육, 장보기·배송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 접수 '17. 12월 ~ 1월

○ 신청서를 전문기관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또는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평가 : 사업추진의지, 지역밀착성, 시장편의성, 사업이해도, 실현가능성 등

○ 대면평가 : 대학의 시장지원현황,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적절성, 창의성, 구체성, 기대효과 등

* (대학) 전통시장 지원 관련 학점 연계시 5점 가점, (시장)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우대, 최근 3년간 정부사업 참여 중 포상 실적이 있는 시장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소진공)	신청·접수 (시장-대학)	서류 및 현장평가 (소진공)	지원대상 선정 (중기부, 소진공)	사업 수행 (시장 - 대학)	정산 및 완료보고 (대학-소진공)
'17.12월	'17.12월~'18.1월	'18.2월	'18.3월	'18.4~12월	'19.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8929, 451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9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연차에 상관없이 시장의 지원금액은 동일한가요?

A 2년차 시장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70%는 차등 지원하고, 하위 30%는 지원 제외됩니다.

4-10 상인교육 및 인프라지원

Ⅰ 교육·컨설팅·인력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시장 특성에 맞는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및 고객만족교육 등으로 시장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상인교육 20,000명 내외(32억원, 국비 100~90%)

○ 상인조직역량강화(시장매니저) 244곳 244명 내외, 2년 지원(연간 32억원, 국비 70%~30%)

○ 시장활성화컨설팅 1,000여건(5억원, 국비 100%)

○ 전통시장 안전관리 안전점검(22.7억원, 국비 100%), 화재감시시스템(95.2억원, 국비70%)

＊ '17년 지원현황 : 상인교육 30천명, 시장매니저 244곳 244명, 컨설팅 1,122건, 안전점검 357곳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 내용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안전점검 등 사업비의 30%~100%

○ 상인교육

교육과정	내 용
상인대학 (점포대학, 상권혁신대학 등, 40~50시간)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조직 및 점포 등을 혁신하는 경쟁력 있는 상인과 명품점포육성, 특성화시장 사업역량, 골목상권재생 및 상생 역량 제고 [상인대학, 점포대학, 예비특성화대학, 상권혁신대학 총 50곳(4,000명) 선정]
상인대학원 (60~80시간)	• 전통시장 혁신리더과정(40명, 1곳) 신설, 상인대학 졸업상인, 상인회 임원 대상 전통시장·상점가등의 활성화를 선도할 상인지도자 육성 (권역별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맞춤형교육 (2~20시간)	• '고객만족교육'중심 3개 과정으로 특화 ① 고객만족서비스과정 : CS, 외국어회화 등 대고객서비스 품질향상 ② 상인요구대응과정 : 상인의식혁신, SNS 등 뉴미디어마케팅, 新 판매기법, 점포 디스플레이 컨설팅 등 매출상승 제고 ③ 상품·점포환경 레벨업 과정: 점포컨설팅, 점포VMD, 신메뉴 및 PB 상품개발, POP교육 등 점포활성화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40시간)	•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및 승계창업 희망자 대상, 성공적인 가업승계 방안제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전국, 권역별 총 16회)
선진시장탐방	• 해외 우수시장 및 명품점포 현장체험으로 시장·상권활성화 기법 체득
워크숍	• 전국 단위 교육을 통한 시장·상점가 활성화 역량배양, 네트워크 구축

○ 시장매니저 지원 : 행정·유통분야 전문인력 채용시 국비 보조

* 급여 : 1,700천원 기준. 시장 규모별(소,중,대) 국비 70~30% 지원(상인회·지자체 30~70%)

○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설현대화·경영혁신·상권개발·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자문서비스 제공

*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점포 지도 컨설팅은 맞춤형 교육에 포함 실시

○ 전통시장 안전관리 : 소방·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감시 시스템 설치 지원

신청 · 접수 '17년 12월 ~ 1월 말(일부 사업은 연중수시)

○ 신청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활성화 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소진공)	사업신청 (상인회)	서류 및 현장 평가 (중기부·소진공)	시장 선정 (중기부·소진공)	사업 지원	정산 및 완료보고
'17.12월말	'17.12~'18.1월	'18.2월말	'18.2~3월	'18.4월~	'18.12~'19.2월

＊ 일정은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8929, 4517(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43, 7844(상인교육), 7865(시장매니저), 7862(시장활성화컨설팅), 7789(안전점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시장에서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있나요?

A 네, 맞춤형교육은 수시로 신청가능한 교육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희망 교육분야를 정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시장매니저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발생시 국비 보조가 가능한가요?

A 순수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여 지원하며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상인회부담분)와 출장비 등의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4-11 시장마케팅 지원

| 공동마케팅, 우수시장박람회·지역상품전시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전통시장 홍보·경품행사 등을 지원하는 공동마케팅, 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우수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지역상품전시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동마케팅 250곳 내외, 전국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3곳 내외(39.7억원)

* '17년 지원현황 : 공동마케팅 244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8곳

- ○ 공동마케팅 : 250곳(33.7억원, 시장규모별 차등 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1곳(4.5억원, 국비 100%)
- ○ 지역상품전시회 : 3곳 내외(1.5억원, 국비 70% 이내, 지자체 3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전국상인연합회, 지역상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박람회 등 국비 70%~100% 지원

- (공동마케팅) 전통시장 축제, 시장별 마케팅 등 행사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시장 규모(소형-중형-대형)에 따라 9백만원~40.5백만원 차등지원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공 포상, 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제공, 우수상품·시장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신청 · 접수 '17.12월 중(일부사업은 수시)

○ 신청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또는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부·소진공)	사업신청 (상인회 등)	서류 및 현장평가 (중기부·소진공)	시장선정 (중기부·소진공)	사업 수행 (상인회)	정산 및 완료보고 (상인회-공단)
'17.12월	'17.12월 ~ '18.1월	'18.2월말	'18.3월	'18.4월	'18.1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042-481-8929, 4517(공동마케팅)
042-481-4574(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 042-363-7631, 7646
(공동마케팅), 7635 (전국우수시장박람회), 7633(지역상품전시회)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시기별 전통시장 축제에 참여하여 경품행사, 공연, 체험활동, 지역축제연계, 행사홍보 등을 지원하며, 축제와는 별도로 시장별 각종 이벤트(패션쇼, 노래자랑 등), 홈페이지 제작, 시장 홍보물 제작, 시장체험학습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사업을 지원합니다.

4-12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를 도입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장보기·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 '18년 총 70곳 내외(1,863백만원)

＊ '17년 지원현황 : 65곳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 내용

○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콜센터, 배송기사, 장보기 인력) 지원

< 분야별 월 인건비 단가 >

구 분	콜센터	배송인력	장보기도우미
월 인건비	1,580천원	1,830천원	790천원

○ 지원비율 : 연차에 따라 국비 90~50% 지원

< 연차별 국비 지원 비율 >

연 차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1년차	국비 90%, 자부담 10%	-
2년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상인회 10%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30%
3년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정착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월인건비 단가 변경

* ('17) 콜센터 1,360천원, 배송인력 1,570천원, 장보기 도우미 700천원 → ('18) 콜센터 1,580천원, 배송인력 1,830천원, 장보기 도우미 790천원

신청 · 접수

■ (신규) '17.12~'18.1월 중

*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시장 선진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배송 인프라 구축현황 등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모집 공고	신청서 작성	지원대상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중기부/소진공	(상인회→지자체→소진공)	소진공	중기부

사업시행승인 및 사업비 지급	사업시행 및 실적보고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사업결과 보고
소진공→상인회	상인회	상인회→공단	공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60, 45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042)363-7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선정 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사업은 선정 후 최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단, 매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 先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5–1 소공인특화자금 94
5–2 성장촉진자금 96
5–3 일반경영안정자금 98
5–4 청년고용특별자금 100
5–5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 102

5-1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4,1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첫째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공인특화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결정 후 직접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5-2 성장촉진자금

|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 (시설분야) 직접대출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기업(소상공인) 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결정 후 직접대출

○ (상품·영업서비스 분야) 대리대출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5-3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 운영 자금 지원

지원 규모 6,025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5-4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2,00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청년 사업자(만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만2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18년 지원시책」참조

5-5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

| 소상공인의 부채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경영사정과 연계한 상환구조를 도입하여 부채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지원 규모 200억원

지원 대상 생계형(간이과세) 또는 저신용(4~7등급) 기준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 대출기간 : 7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및 원금 상환유예가능기간 1년 포함)
- ○ 상환방식 :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결제계좌를 통한 대출금 자동 상환
-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기업은행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 절차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공지 예정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8년 지원시책」 참조

제6장
일자리 안정자금

6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해결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조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특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지급 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철 필요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 www.4insure.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 total.k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 edi.nhis.or.kr
*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 minwon.nps.or.kr
* 고용보험 EDI(한국고용정보원) : www.ei.go.kr

○ 방문 · 우편 · 팩스(3,940개소)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209호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 광진구 능동로275, 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한국산업단지 208호 공단(구로동)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6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강동, 대저)
(부산)남부센터	(051)633-6564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동구(범일동), 연제구, 사상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초량, 수정, 좌천), 강서구(일부)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지점 2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 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두암동)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신안군, 영광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5층 (신대리1988)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화순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수원시, 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8024-5917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 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 영우프라자빌딩 7층 703호	광명시, 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 코리아디자인센터 407호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 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 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부평웨딩홀 채원부페(부평동)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중구, 동구
(충남)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1동 3층	서산시, 보령시, 태안시, 당진군, 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4 공주소상공인지원센터 1층	공주시, 청양군, 세종시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삼척센터	(033)554-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2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센 터	전화 FAX	주 소	관할구역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정문 옆 별관1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 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5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79-3번지, 경남은행 서부영업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중앙회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재 단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임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018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발행일 : 2018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4567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